

# 예산총칙

## 2015년도 추가경정 제1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09,124,264	39,273,728
일반회계		1,025,055,395	30,751,662
특별회계		284,068,869	8,522,066
공기업특별회계		163,346,048	4,900,381
상수도사업		64,506,955	1,935,209
하수도사업		98,839,093	2,965,173
기타특별회계		120,722,821	3,621,685
공유재산관리		38,705,587	1,161,168
의료급여기금		4,397,127	131,9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319,000	39,5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605,590	18,168
교통사업		46,501,016	1,395,030
도시철도건설사업		12,330,453	369,914
폐기물처리시설		6,163,954	184,919
도시재정비촉진		1,426,000	42,780
도시개발		9,274,094	278,22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12,82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